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·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56

발의연월일: 2024. 12. 5.

발 의 자:최보윤·서미화·김선교

윤종오 · 성일종 · 김미애

서범수 · 남인순 · 박성민

윤영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유엔장애인권리협약(CRPD)에 따르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,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,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기존의 법률, 규칙,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음.

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법률 개정 검토,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 바, 국내법령과 이 협약이 상충 내지 충돌되는 부분의 개정과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국내법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상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함으로

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(안 제11조).

법률 제 호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 제목 "(청각 및 언어 장애인)"을 "(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청각 및 언어 장애인) (생	제11조(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
략)	<u>장애인)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
	과 같음)